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문구 조정(시행규칙 안 제20조제2항)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문구를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을 “영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 내용) ① (생 략) ② <u>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 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생 략)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37조제2항</u> ----- ----- ----- -----. 1. · 2. (현행과 같음)